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 양 우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별법 제정으로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이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,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세계유산 관련 주요시책 등의 협의 대상 명시 (안 제2조)
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등 6개 사항
- 나. 세계유산지구의 지정·변경 또는 해제 시 고시 내용 및 공지 방법 등 규정 (안 제3조)
 - 세계유산지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등의 내용, 지정 등의 사유 등 고시
 - 둘 이상의 일간신문, 시·도보,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지
- 다.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고시 내용 및 자료 제출 규정 (안 제4조)
 -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,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,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등 고시 및 지자체 자료 제출 요구
- 라.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기간 규정 (안 제5조)
 - 시·도의 게시판, 시·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표

마.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 규정 (안 제6조)

-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, 사업별 추진방침,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, 사업별 세부계획 등의 내용 포함
-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통보/ 매년 11. 30. 까지 (문화재청장→시·도지사)
-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/ 매년 1. 31. 까지(시·도지사→문화재청장)
-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·도보에 공표

바. 기초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규정 (안 제7조)

-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, 대상 유산의 보존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 포함
- 관계 행정기관, 세계유산 소유자·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 활용

사.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내용 및 기한 등 규정 (안 제8조)

- 대상 세계유산 개요, 정기점검 개요, 정기보고서 양식 및 등재 신청서에서 정하는 사항,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, 전년도 정기 점검 결과와 비교, 종합의견 등 6개 사항
-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/ 매년 4. 30. 까지(시·도지사→문화재청장)

아. 세계유산보존협회의 협의사항 및 운영 등 규정 (안 제9조~제13조)

-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계유산의 변경 사항,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·도지사가 협의에 부치는 사항 등
- 위원회 임기(2년), 해임 및 해촉, 수당 및 운영 세칙 등의 사항 규정

자.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규정 (안 제14조)

-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재청, 시·도의 게시판, 시·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(60일 이상)
-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 반영여부 검토 및 결과 통보

차. 재정지원 사업 내용 규정 (안 제15조)

- 세계유산 범위의 변경에 관한 학술조사·연구·교류 활동, 세계 유산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활동, 세계유산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의 사업

카.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 등 규정 (안 제16조 및 제17조)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, 시행, 세계유산 등에 대한 기초조사, 정기점검 및 분석·평가,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을 위임
- 세계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세계 유산 등에 대한 기초조사, 정기점검 및 분석·평가 등의 업무 위탁 및 내용 고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생 략

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요시책 등의 협의)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할 세계유산의 등재·보존·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
2.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,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
3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
4. 「습지보전법」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
5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·경관 보전지역의 지정
6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

제3조(세계유산지구의 고시 등)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의 지정·변경 또는 해제(이하 "지정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1. 세계유산지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등의 내용
2. 지정 등의 사유
3. 그 밖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

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시·도보,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합계획의 고시) ①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.

1.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
2.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
3. 종합계획의 주요내용

②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관할구역의 세계유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공표) 관할 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의 게시판, 시·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에 관한 연도별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
2. 사업별 추진방침
3.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
4. 사업별 세부계획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문화재청장은 시·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·도지사에게 알리고,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·도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
2. 대상 유산의 보존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문화재청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(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 이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대상 세계유산의 명칭, 위치, 면적 등 개요
2.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, 단체 등 정기점검 개요
3.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한 정기보고서 양식 및 등재신청서에서 정하는 사항
4.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
5. 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 비교, 분석
6. 종합의견

② 기타 점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.

제9조(세계유산보존협회의 협의사항)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“그

밖에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세계유산의 등재·변경·해제·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등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계유산의 변경 사항
2.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·도지사가 협의에 부치는 사항

제10조(위원의 임기)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2조(수당)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운영 세칙)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·도지사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재청, 시·도의 게시판, 시·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·도지사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재정지원) 법 제22조제6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세계유산 범위의 변경에 관한 학술조사·연구·교류 활동
2. 세계유산 교육자료의 제작, 체험교육 등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활동
3.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유산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각종 활동

제16조(권한의 위임)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
2. 법 제15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에 대한 기초조사
3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분석, 평가

4.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

제17조(권한의 위탁)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세계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15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에 대한 기초조사
2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분석,평가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재청 세계유산팀	
연 락 처	042-481-3181